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
----------	----

제출연월일 : 2011.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안 제3조)
 - 건물번호판 교부 및 재교부의 경우 소유자·잠유자가 부담하여야 함으로 수수료의 범위 및 징수방법과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예정인 2012.01.01부터(안 부칙 제1조) 수수료를 징수함을 명시
- 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원인자 부담금 집행관리 방법 명시(안 제4조)
 -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징수된 원인자 부담금의 집행관리 방법 명시
- 라.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 마. 도로명주소의 방문 고지시 실비변상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2011년 전국 일제히 실시되는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방문고지원(이장)의 실비 변상 근거 마련
- 바. “평창군 새주소위원회”를 “평창군 도로명주소 위원회”로 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2011년 당초예산 11,280천원 반영

-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 $20,000\text{원} \times 3\text{일} \times 188\text{명} = 11,280,000\text{원}$

다. 관계부처 협의 : 해당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 : '10. 10. 22 ~ 11. 11(20일간) 실시, 제출된 의견 없음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6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군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손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 또는 손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손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 또는 손실되었거나 훼손 또는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 등(영상물, 책자,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를 말한다)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실비변상)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평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평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평창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3년(三年)으로 하고, 한 차례(一次)만 연임(連任)할 수 있다.

② 군수(郡守)는 위원(委員)이 다음 각 호(各號)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을 때에는 임기(任期)만료(滿了) 전(前)이라도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위원(委員)이 사망(死亡), 질병(疾病) 또는 그 밖(其外)의 사유(事由)로 직무(職務)를 수행(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委員)이 품위(品威)손상(損傷), 장기(長期)불참(不參) 등의 사유(事由)로 위원(委員)의 직무(職務)를 수행(수행)하는데 부적당(不適當)하다고 판단(判斷)되는 때
3. 위원(委員)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때

③ 조례(條例) 제17조(第17條)제3항(第3項)에 따라 위촉(委任)된 위원(委員) 중 결원(缺員)이 생겼을 경우(場合) 새로 위촉(委任)된 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전임(前任)위원(委員) 임기(任期)의 남은(剩餘) 기간(期間)으로 하고, 공무원(公僕)인 위원(委員)의 임기(任期)는 그 직위(職位)에 재임(在任)하는 기간(期間)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委員會)의 운영(運營)) ① 위원회(委員會)의 회의(會議)는 군수(郡守)의 요구(要求)가 있거나 위원장(委員長)이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경우(場合)에 위원장(委員長)이 소집(召集)하고, 위원장(委員長)은 그 의장(議長)이 된다.

② 제1항(第1項) 규정(規定)에 따라 회의(會議)를 소집(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委員長)은 회의(會議)소집(召集)일 7일(七日)전(前)까지 회의(會議)의 일시(日時), 장소(場所), 안건(案件) 등을 각 위원(委員)에게 서면(書面)으로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緊急)을 요(要)하는 경우에는 회의(會議)개최(開會)일 전(前)까지 통지(通知)할 수 있다.

③ 위원회(委員會)의 회의(會議)는 재적(在籍)위원(委員) 과반(過半)수 출석(出席)으로 시작(始)하고 출석(出席)위원(委員) 과반(過半)수 찬성(贊成)으로 의결(議決)한다.

제20조(위원장(委員長)의 직무(職務)) ① 위원장(委員長)은 위원회(委員會)를 대표(代表)하고 위원회(委員會)의 업무(業務)를 총괄(總括)한다.

② 위원장(委員長)이 부득(不得已)이한 사유(事由)로 직무(職務)를 수행(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副委員長)이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辦)하며, 위원장(委員長)과 부위원장(副委員長)이 모두 직무(職務)를 수행(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委員) 중 연장(年長)자 순(順)으로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辦)한다.

제21조(간사(幹事)) ① 위원회(委員會)에 간사(幹事) 1명(一名)을 두며, 간사(幹事)는 도로명주소 담당부서(擔當部)의 장(長)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2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201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발취

■ 도로명주소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사업 촉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의3 (도로명주소대장)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타내기 위한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2.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설정·변경·폐지
3. 도로명주소에 사용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정비·철거
5. 관련 지번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참고사항의 변경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처리장치에 의하여 작성·관리되어야 한다.

제8조의4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 시·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도 또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군·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원인자 부담)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광고)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해당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7조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지도 표기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22조의2 (도로명주소위원회) ④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도로명의 부여 절차) ①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건물등의 소유자는 법 제10조 또는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또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 전단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부여를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길이와 폭(제6조제2항의 도로별 구분기준을 포함한다)
2.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3. 기초번호 간의 간격(이하 "기초간격"이라 한다)과 기초번호
4. 도로구간의 도로에 부여할 도로명(이하 "예비도로명"이라 한다)과 그 부여 사유

5.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도로명의 결정 절차

7.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의 부여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3. 도로명의 부여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부여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예비도로명과 다르게 부여하기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부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 (도로명의 변경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사용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주소사용자는 시장등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도로명이나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또는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는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하려는 경우: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3. 그 밖의 경우: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② 도로구간이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시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도로명의 변경을 신청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이거나 도로명 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보등에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현재의 도로명
2. 부여하려는 예비도로명
3. 도로명의 변경 사유
4.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5.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명의 내력, 현행 도로명의 부여 사유와 도로명의 변경 사유
2. 해당 도로구간에 있는 건물번호의 개수 및 그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의 현황
3. 도로명의 변경에 따른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비용의 조달방법
4.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주민 및 시장등의 의견
5. 해당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끝지점·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6.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 결과, 변경 내용 및 절차(변경 내용 및 절차는 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제4항의 심의 결과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한 자가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이고 새로 사용될 도로명(이하 "후보도로명"이라 한다)을 제시한 경우로서 제4항의 심의 결과 현재의 도로명을 후보도로명(2개 이상일 때에는 1순위 후보도로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시장등은 제7항 본문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서면동의를 받은 날이나 서면동의를 생략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 변경사항과 변경기준일(변경사항의 고시일을 말한다)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시장등은 제7항 본문에 따른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도로명을 예비도로명 또는 후보도로명이 아닌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하여야 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 본문에 따른 동의 없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로명에 사용된 도로별 구분기준을 제6조제2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경우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의 기초번호를, 그 도로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같게 변경하는 경우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의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도로명주소기본도의 작성) ① 시장등이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작성하는 도로명주소기본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철도, 호수, 하천, 공원, 다리 등의 배경자료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 (광고)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경우: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 도안 등

2. 도로명주소안내판의 경우: 업소의 이름 또는 상징 도안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시장등은 광고를 게재한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제작·설치·배포하기 전에 미리 그 광고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명주소안내판을 이용한 광고는 도로명주소안내판에 붙인 안내도에만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광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및 광고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도로구간등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1항, 이 영 제11조의2제5항 및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도로구간등의 부여·변경·폐지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명·기초번호의 부여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설정을 고시하는 경우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구간등의 설정·부여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로명·기초번호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변경 전·후의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구간등의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로명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변경 전·후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마. 도로명의 변경 고시일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도로구간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 가. 변경 전·후의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나.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 다.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 라.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 마.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초번호만의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나. 변경 전·후의 기초간격 및 기초번호

다. 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마. 기초번호 변경 고시일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도로명·기초번호의 폐지를 수반하는 도로구간의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

가. 제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나. 폐지 전 도로명과 그 폐지 사유

다. 도로구간 폐지 고시일

라.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예정일 5일 전에 시장등은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고시 예정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폐지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변경·철거하여야 한다.

제22조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사항) ①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3.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고시인 경우에는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부여 사유

4. 도로명주소에 사용된 도로명의 고시일과 그 도로명의 부여 사유

5. 고지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 절차 및 기간(10일 이상으로 한다)에 관한 사항(고시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6.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 요건 및 절차
7. 공법관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공문서상의 주소 전환계획
8.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등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주소의 변경일(고시인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을 말한다)과 그 변경 사유
2.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항

④ 시장등이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변경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8호 및 제3항제1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시장등이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지·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로명주소
2. 도로명주소의 폐지일과 그 폐지 사유
3.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직권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해당 시·군·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

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시 예정일 5일 전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시 예정 사실 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사실이 고 지 대상자에게 고지됐음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 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주소에 따라 정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주민등록의 변경요청 을 한 사실을 해당 주소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고시 절차) ① 시장

등은 신청을 받아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고시할 때에는 신 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해당 시·군·구의 홈페이지 등에 제22조제2 항 또는 제4항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부여·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 항·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의 고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를 폐지할

때에는 고지를 생략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폐지를 고지할 때에는 공보등을 이용하여 제2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명주소 폐지의 고지·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8.14>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일련 번호	도 로 명	건물번호	접수일	교부일	신 청 자		수령자	비고
					성 명	주 소		